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 안 번 호	25-8
------------	------

제출년월일 : 2025.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화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서울특별시에서 마포구에 배분되는 금액을 별도의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해당 세입과 세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 제시

나. 세입 및 세출에 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 세입에 관한 사항
- 세출에 관한 사항

다. 잉여금의 활용(안 제5조)

라. 회계에 관한 준용(안 제6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 2)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4. 12. 26. ~ 2025. 1. 15. (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5) 2025년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수정의결(2025. 1.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화력발전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배분금액”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화력발전소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 ② “시 자체사업”이란 배분금액 이외의 금액으로 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배분금액
2.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3. 특별회계 예탁금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과 지역개발에 관련된 사업
2. 구가 추진하는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 관련 홍보·교육사업
3.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4. 시 자체사업 중 구에 지원되는 사업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1) 비용발생 요인

－ 제4조(세출) 제1호~제5호 : 구가 추진하는 사업비 및 관련 경비

2) 수입발생 요인

－ 제3조(세입) 제1호~제3호 : 서울시에서 배분받는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조정교부금 및 회계 운용 수입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비용추계기간 : 2025년 1월 ~ 2029년 12월(60개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 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이후 계속)	합계
세입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30.5	19	19	19	19	106.5
	소계(a)	30.5	19	19	19	19	106.5
세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30.5	19	19	19	19	106.5
	소계(b)	30.5	19	19	19	19	106.5
□ 총 비용(a-b)		－	－	－	－	－	－

가. 비용 : 구가 추진하는 사업비

4. 재원조달 방안

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5. 덧붙이는 의견

가. 비용추계의 세출은 차후 사업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비용추계의 세입은 차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울화력발전소 발전량에 따라 과세)

6. 작성자 : 환경녹지국 맑은환경과 조재현(☎ 3153-9284)